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5-6223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11.0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6.11.06.(금)	2026.11.16.(월)	2026.11.17.(화)	2026.11.18.(수)	2026.11.19.(목)	2026.11.25.(수)	2026.11.28.(토)~ 2026.12.02.(수)	2026.12.07.(월)~ 2026.12.09.(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0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h-raon.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06.(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4.11.0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 정	2026.11.16.(월)	2026.11.17.(화)	2026.11.18.(수)	2026.11.19.(목)	2026.11.25.(수)	2026.11.28.(토)~ 2026.12.02.(수)	2026.12.07.(월)~ 2026.12.09.(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견본주택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13번지) • 문의 : ☎1555-6223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

※ (예외1)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2)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본인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본인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당첨 가능합니다.(혼인특례 사용하여 청약신청).

※ (예외3)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1.25.)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2026.06.1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3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과 – 8310호(2026.11.0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 최고 26층, 2개동 총 176세대(토지등소유자 45세대, 임대 18세대) 중 일반분양 113세대
[특별공급 60세대 (기관추천 11세대, 다자녀가구 11세대, 신혼부부 17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7세대, 신생아 1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497	01	045.0210	45	45.0210	15.7800	60.8010	29.2930	90.0940	14.1850	7	-	-	2	-	1	-	3	4	1
	02	058.3650	58	58.3650	19.6810	78.0460	37.9760	116.0220	18.2080	17	2	2	3	-	1	2	10	7	-
	03	059.9740	59	59.9740	19.8970	79.8710	39.0250	118.8960	18.6340	20	2	2	3	1	1	2	11	9	2
	04	070.9640	70	70.9640	22.8160	93.7800	46.1730	139.9530	21.8790	26	3	3	4	1	2	3	16	10	2
	05	073.4730T	73T	73.4730	26.2310	99.7040	47.8080	147.5120	23.2610	1	-	-	-	-	-	-	-	1	-
	06	084.9940	84	84.9940	27.1470	112.1410	55.3030	167.4440	26.1620	35	4	4	5	1	2	4	20	15	2
	07	084.9400T	84T	84.9400	29.0780	114.0180	55.2690	169.2870	26.6000	2	-	-	-	-	-	-	-	2	-
	08	093.5970T	93T	93.5970	32.3390	125.9360	60.9020	186.8380	29.3810	1	-	-	-	-	-	-	-	1	-
	09	098.9000T	98T	98.9000	32.9730	131.8730	64.3530	196.2260	30.7660	2	-	-	-	-	-	-	-	2	-
	10	126.8090T	126T	126.8090	42.1480	168.9570	82.5120	251.4690	39.4170	2	-	-	-	-	-	-	-	2	-
합 계										**113**	**11**	**11**	**17**	**3**	**7**	**11**	**60**	**53**	**7**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전용면적 기준)'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홈 편의상의 표기이며 A동은 101동, B동은 102동으로 간주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평형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는 총 공급세대(113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필로티(근린생활시설 등)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청약시)	045.0210	058.3650	059.9740	070.9640	084.9940	073.4730T	084.9400T	093.5970T	098.9000T	126.8090T
약식표기(견본주택 등)	45	58	59	70	84	73T	84T	93T	98T	126T

■ 토지등소유자 및 임대 공급대상-「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6호

주택형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토지등소유자	임대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045.0210	45	45.0210	15.7800	60.8010	10	4	14
058.3650	58	58.3650	19.6810	78.0460	-	4	4
059.9740	59	59.9740	19.8970	79.8710	16	6	22
070.9640	70	70.9640	22.8160	93.7800	12	4	16
084.9940	84	84.9940	27.1470	112.1410	7	-	7
합계					45	18	63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타입)	동/라인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7.02.15.	2027.05.17.	2027.09.17.	2028.01.17.	2028.06.15.	2028.11.15.	
45	102동 4호	4층	1	317,825,550	301,174,450	-	619,000,000	10,000,000	5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85,700,000
		5층	1	320,906,250	304,093,750	-	625,000,000	10,000,000	5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187,500,000
		6-10층	4	327,581,100	310,418,900	-	638,000,000	10,000,000	5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191,400,000
		21-24층	1	337,850,100	320,149,900	-	658,000,000	10,000,000	5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197,400,000
58	101동 4호	6-10층	5	429,757,650	407,242,350	-	837,000,000	10,000,000	73,700,000	83,700,000	83,700,000	83,700,000	83,700,000	83,700,000	83,700,000	251,100,000
		11-15층	5	433,865,250	411,134,750	-	845,000,000	10,000,000	7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253,500,000
		16-20층	5	437,972,850	415,027,150	-	853,000,000	10,000,000	7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255,900,000
		21-24층	2	442,593,900	419,406,100	-	862,000,000	10,000,000	7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258,600,000
59	102동 2,3호	4층	2	462,105,000	437,895,000	-	900,000,000	10,000,000	8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90,000,000	270,000,000
		5층	1	466,726,050	442,273,950	-	909,000,000	10,000,000	8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90,900,000	272,700,000
		6-10층	6	476,481,600	451,518,400	-	928,000,000	10,000,000	8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278,400,000
		11-15층	3	481,102,650	455,897,350	-	937,000,000	10,000,000	8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281,100,000
		16-20층	3	485,723,700	460,276,300	-	946,000,000	10,000,000	8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283,800,000
		21-24층	5	490,858,200	465,141,800	-	956,000,000	10,000,000	85,600,000	95,600,000	95,600,000	95,600,000	95,600,000	95,600,000	95,600,000	286,800,000

70	101동 2,3호	4층	2	531,934,200	504,065,800	-	1,036,000,000	10,000,000	93,600,000	103,600,000	103,600,000	103,600,000	103,600,000	103,600,000	103,600,000	310,800,000
		5층	1	537,582,150	509,417,850	-	1,047,000,000	10,000,000	94,700,000	104,700,000	104,700,000	104,700,000	104,700,000	104,700,000	104,700,000	314,100,000
		6-10층	7	548,364,600	519,635,400	-	1,068,000,000	10,000,000	9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320,400,000
		11-15층	5	554,012,550	524,987,450	-	1,079,000,000	10,000,000	9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107,900,000	323,700,000
		16-20층	3	559,660,500	530,339,500	-	1,090,000,000	10,000,000	99,000,000	109,000,000	109,000,000	109,000,000	109,000,000	109,000,000	109,000,000	327,000,000
		21-24층	8	565,308,450	535,691,550	-	1,101,000,000	10,000,000	100,100,000	110,100,000	110,100,000	110,100,000	110,100,000	110,100,000	110,100,000	330,300,000
84	101동 1호, 102동 1호	4층	2	617,166,900	584,833,100	-	1,202,000,000	10,000,000	110,200,000	120,200,000	120,200,000	120,200,000	120,200,000	120,200,000	120,200,000	360,600,000
		5층	2	623,328,300	590,671,700	-	1,214,000,000	10,000,000	111,400,000	121,400,000	121,400,000	121,400,000	121,400,000	121,400,000	121,400,000	364,200,000
		6-10층	9	636,164,550	602,835,450	-	1,239,000,000	10,000,000	113,900,000	123,900,000	123,900,000	123,900,000	123,900,000	123,900,000	123,900,000	371,700,000
		11-15층	8	642,839,400	609,160,600	-	1,252,000,000	10,000,000	115,200,000	125,200,000	125,200,000	125,200,000	125,200,000	125,200,000	125,200,000	375,600,000
		16-20층	7	649,000,800	614,999,200	-	1,264,000,000	10,000,000	116,400,000	126,400,000	126,400,000	126,400,000	126,400,000	126,400,000	126,400,000	379,200,000
		21-24층	7	655,675,650	621,324,350	-	1,277,000,000	10,000,000	117,700,000	127,700,000	127,700,000	127,700,000	127,700,000	127,700,000	127,700,000	383,100,000
73T	102동 4호	최상층 (복층)	1	612,032,400	579,967,600	-	1,192,000,000	10,000,000	109,200,000	119,200,000	119,200,000	119,200,000	119,200,000	119,200,000	119,200,000	357,600,000
84T	102동 2,3호	최상층 (복층)	2	714,208,950	676,791,050	-	1,391,000,000	10,000,000	129,100,000	139,100,000	139,100,000	139,100,000	139,100,000	139,100,000	139,100,000	417,300,000
93T	101동 4호	최상층 (복층)	1	737,503,260	698,633,400	69,863,340	1,506,000,000	10,000,000	140,600,000	150,600,000	150,600,000	150,600,000	150,600,000	150,600,000	150,600,000	451,800,000
98T	101동 2,3호	최상층 (복층)	2	787,943,390	746,415,100	74,641,510	1,609,000,000	10,000,000	150,900,000	160,900,000	160,900,000	160,900,000	160,900,000	160,900,000	160,900,000	482,700,000
126T	101동 1호, 102동 1호	최상층 (복층)	2	989,703,910	937,541,900	93,754,190	2,021,000,000	10,000,000	192,100,000	202,100,000	202,100,000	202,100,000	202,100,000	202,100,000	202,100,000	606,300,000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공급금액은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지상2층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금 1차 및 계약금 2차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비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선수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열쇠 수령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본 제출 불가)
- 전산검색 결과 나온 항목들을 소명해야 하고, 관련내용이 소명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4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45	58	59	70	84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1	-	1	-	2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1	1	2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	-	1	1	2
	중소기업근로자	-	-	1	-	1	2
	장애인 \| 서울특별시	-	1	1	-	1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2년이상 계속거주자(50%)	-	1	1	2	2	6
	서울특별시2년미만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 경기도(50%)	-	1	1	1	2	5
신혼부부 특별공급		2	3	3	4	5	1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1	1	1	3
생애최초 특별공급		1	1	1	2	2	7
신생아 특별공급		-	2	2	3	4	11
합 계		**3**	**10**	**11**	**16**	**20**	**6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td></tr>
</table>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유의사항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이 불가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불가로 부적격될 수 있음)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장애인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태아, 입양자녀 포함)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 지역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단,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잔여물량 50%에서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인천광역시 거주자와 재경쟁하며, 이경우 지역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배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th><th>점수</th></tr>
<tr><td colspan="2">계</td><td>100</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3명</td><td>35</td></tr>
<tr><td>2명</td><td>25</td></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2명</td><td>10</td></tr>
<tr><td>1명</td><td>5</td></tr>
<tr><td rowspan="2">(3)</td><td rowspan="2">세대구성</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td rowspan="3">(4)</td><td rowspan="3">무주택기간</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인천·서울·경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
<tr><td colspan="2">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td>5</td><td>10년 이상</td><td>5</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r><td colspan="6">유의사항</td></tr>
<tr><td colspan="6">※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td></tr>
</table>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td></tr>
</table>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17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tr><th>순위</th><th>내용</th></tr>
<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
</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td></tr>
</table>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0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세대

구분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7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3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td></tr>
<tr><td>비고</td><td>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td></tr>
</table>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0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표 참고(페이지 16.)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td></tr>
<tr><td>비고</td><td>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td></tr>
</table>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0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표 참고(페이지 16.)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

- 세대주일 것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 불가)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 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
<tr><td>전용면적 60㎡ 이하</td><td>40%</td><td>60%</td></tr>
<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70%</td><td>30%</td></tr>
<tr><td>전용면적 85㎡ 초과</td><td>80%</td><td>20%</td></tr>
</tabl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r><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able>
</td></tr>
</table>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을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경우 배우자는 해당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함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신청대상자</th><th>신청일시</th><th>신청방법</th><th>신청장소</th></tr>
<tr><td>특별공급</td><td colspan="2">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td><td>2026.11.16.(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td><td rowspan="3">•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td><td>•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 주소 :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13번지]</td></tr>
<tr><td rowspan="3">일반공급</td><td rowspan="2">1순위</td><td>해당지역</td><td>2026.11.17.(화) 09:00~17:30</td><td rowspan="2">•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td></tr>
<tr><td>기타지역</td><td>2026.11.18.(수) 09:00~17:30</td></tr>
<tr><td colspan="2">2순위</td><td>2026.11.19.(목) 09:00~17:30</td></tr>
</table>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신분증</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able>
<tr><td>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td><td colspan="2">-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td></tr>
<tr><td>공고단지
청약연습</td><td colspan="2">-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
서비스</td><td>청약홈</td><td>-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25.(수) ~ 2026.12.04.(금) /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td></tr>
<tr><td>문자</td><td>- 제공일시 : 2026.11.25.(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6.11.28.(토) ~ 2026.12.02.(수) (주말 포함, 5일간)** **10:00~17:00**	•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13번지]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 서류는 반드시 지참
예비입주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공통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 등 본인/대리 발급이 구분되는 서류의 경우 본인 발급용이 아닌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모두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 합니다.(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소명자료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 :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주택소유여부 확인) ※ 특별공급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이 불가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전체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외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근무(단신부임)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서류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인정 안됨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비자 발급내역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전체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배점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포함한 경우 및 출산특례를 신청한 경우 (출산의 경우 출생 증명서) ※ 국내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기재) •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주택공급신청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견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당첨자의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인 미혼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포함한 경우 및 출산특례를 신청한 경우 (출산의 경우 출생 증명서) ※ 국내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기재) •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포함)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FAX수신 문서 가능) ※ 조회기간 :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직인 날인 된 원본 서류 필수(FAX 수신문서, 복사본 등 불가)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열람·발급 > 부동산 > "소유현황열람"(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캡쳐 출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발급기관) 정부24(www.gov.kr)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검색 및 발급
		○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주택공급신청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견본주택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내용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택공급신청자와 피부양직계존속의 관계 및 피부양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주민등록표등본 불인정)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전체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아래와 같은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발급기간: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전체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내역)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024.06.19.이후 태어난 자녀 또는 현재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어 출산특례를 신청한 경우 (출산의 경우 출생 증명서) ※ 국내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기재)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2024.06.19.이후 출산예정인 태아가 있어, 출산특례 청약 신청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견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자녀수에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주택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포함한 경우 (출산의 경우 출생 증명서) • 국내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기재) •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및 만19세 이상 세대원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포함)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FAX수신 문서 가능) ※ 조회기간 :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증빙서류
		○	비사업자확인 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열람·발급 > 부동산 > "소유현황열람"(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캡쳐 출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발급기관) 정부24(www.plus.gov.kr)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검색 및 발급
		○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신생아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자녀수에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직계비속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포함한 경우 (임신 진단서 외 불가) • 국내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기재) •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및 만19세 이상 세대원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포함)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FAX수신 문서 가능) ※ 조회기간 :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직인 날인 된 원본 서류 필수(FAX 수신문서, 복사본 등 불가)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열람·발급 > 부동산 > "소유현황열람"(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캡쳐 출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발급기관) 정부24(www.gov.kr)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검색 및 발급
		○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청약 신청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견본주택 비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가점제)	○		청약 가점내용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분리세대 포함)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자녀수에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아래와 같은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발급기간: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전체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관계확인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아래와 같은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발급기간: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전체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및 성명 등 전부표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전체)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해당직장 발급 서류 일체 직인날인필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 날인본, 팩스 불가)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연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본, 팩스 불가)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근로계약서상의 총 급여액을 월할 계산하여 추정	
	전년도 전직(이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본, 팩스 불가)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본, 팩스 불가)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본, 팩스 불가)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서[입주자모집공고일(`26.11.06.)이전 신고 분만 인정]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입주자모집공고일(`26.11.06.)이전 최근 신고 분만 인정]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공단
	법인대표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본, 팩스 불가) ③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본, 팩스 불가) ④ 전년도 재무제표	① 세무서 ②,③,④ 해당직장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 날인본, 팩스 불가) ② 위촉(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 날인본, 팩스 불가)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택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본, 팩스 불가)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 날인본, 팩스 불가) ※ 금년도 신규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위촉(해촉)증명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 (견본주택 비치) ② 사실증명서 (신고사실 없음)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예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해당직장 발급 서류 일체 직인날인필수)	발급처
자격입증 기본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②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와 납세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일 경우) ③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세무서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통산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에게서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별 각각 발급(전국단위 주택, 건물, 토지 대상)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정부24(www.gov.kr) ③ 위택스(www.wetax.go.kr)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주택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특별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특별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발급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별 각각 발급(전국단위 주택, 건물, 토지 대상) ※ 발급방법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위택스,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영유아 및 미성년자 포함)의 자산 입증서류

※ 자산가액(부동산가액) 산정 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산 산정해야 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출산특례(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를 사용한 경우 해당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산정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table>
<tr><td>검색대상</td><td>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td></tr>
<tr><td>주택의 범위</td><td>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td></tr>
<tr><td>주택처분
기준일</td><td>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r><td>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td><td>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table>
<tr><th>조항</th><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th>주거전용면적</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
<tr><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
<tr><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
<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
<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
</table>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td></tr>
</table>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6.12.07.(월) ~ 2026.12.09.(수) 10:00 ~ 17:00 (3일간)	•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13번지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홈페이지(https://www.jh-raon.com)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1555-6223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MG새마을금고	9002-2080-9868-6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 예금주는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로서 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분양대금납부계좌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동일하나,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불가)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홈 편의상의 표기이며 A동은 101동, B동은 102동으로 간주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정당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용 [발급용도(직접작성):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 :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본인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 별도 납부 •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세부사항 당사 홈페이지 참고)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홈페이지 서식 게시)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인지세 구매 방법	
과세 대상	① 아파트 공급계약서+발코니 확장계약서(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비 합산금액) ②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유상옵션)
구매 방법	① 우체국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정부수입인지를 구매 ② 정부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출력 전 테스트 인쇄 권장)**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비고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상기 과세 대상에 따라 구매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 확장 계약서**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나,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인쇄 오류 시 재발행 불가)**

※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 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1. 본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환불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와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1.「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 제28조 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투기 적발자 처벌 등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행위(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주택 자격을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단, 특별공급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합니다. (단, 재당첨 제한,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시 사업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10%(1차, 2차 계약금)를 완납한 계약자에 한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조건은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대출 알선이 진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전체 공급대금의 20%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자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변경 통지 시 변경일) 전일까지만 사업주체에서 이자를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변경 통지 시 변경일)부터는 금융기관의 지침을 준수하여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으며,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개인의 신용상태, 주택 소유 여부, 기존 대출 유무, 금융신용불량 거래 등 계약자 본인의 귀책 및 개인 사유로 인하여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될 예정이며, 분양사무소 및 분양상담사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상담(전화 상담 포함) 시 안내된 대출 가능 여부는 확정 사항이 아닙니다. 최종 대출 가능 여부 및 조건은 추후 선정된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법률 변경,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규제지역 지정, LTV/DTI 축소, 대출한도 및 건수 제한 등), 집단대출 보증기관(HUG, HF 등)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개정,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대출 조건 및 한도가 제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은 규제지역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법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등은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 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약정 체결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및 계약사항 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대출취급기관 간 계약 관리 및 일정 통보, 적격 심사를 목적으로 제공·활용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에 대한 공급대금 및 연체료, 중도금 대출 후불이자 등을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 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①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VAT 포함]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비고
		계약시	2027.02.15.	입주지정일	
45	9,900,000	990,000	990,000	7,920,000	-
58	18,500,000	1,850,000	1,850,000	14,800,000	-
59	19,000,000	1,900,000	1,900,000	15,200,000	-
70	22,500,000	2,250,000	2,250,000	18,000,000	-
84	23,500,000	2,350,000	2,350,000	18,800,000	-
73T	28,500,000	2,850,000	2,850,000	22,800,000	-
84T	29,500,000	2,950,000	2,950,000	23,600,000	-
93T	31,500,000	3,150,000	3,150,000	25,200,000	-
98T	32,000,000	3,200,000	3,200,000	25,600,000	-
126T	34,500,000	3,450,000	3,450,000	27,600,000	-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계약 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관련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제조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카탈로그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미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확장시 제공 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하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건축법 시행령」및「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승인 후 발코니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승인 후 발코니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시공 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 과세 금액이 결정되며, 해당 수입인지는 계약서 작성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MG새마을금고	9002-2080-9868-6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동일하나,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유상옵션 안내사항(공통)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한 품목입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 유상옵션 계약은 본 공동주택 계약 해제 사유와 동일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유상옵션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선택품목 총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시공사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시공사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원상복구 및 제품 감가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하며 상기 금액은 기본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 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추가 계약 및 계약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 대금에 대하여 시공사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유상옵션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①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② 스타일업 / ③ 선택형 개별옵션)

①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원, VAT 포함]

약식표기 (타입)	구분	설치장소	제조사	판매가격
45	일반형	거실+안방	삼성전자	3,820,000
		거실+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6,630,000
	고급형	거실+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8,520,000
58	일반형	거실+안방	삼성전자	3,910,000
		거실+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6,880,000
	고급형	거실+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8,810,000
59	일반형	거실+안방	삼성전자	3,720,000
		거실+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6,330,000
	고급형	거실+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8,220,000

70	일반형	거실+안방	삼성전자	3,670,000
		거실+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6,720,000
	고급형	거실+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8,640,000
84	일반형	거실+안방	삼성전자	4,560,000
		거실+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7,430,000
	고급형	거실+안방+침실1+침실2	삼성전자	9,410,000
73T	일반형	거실+안방	삼성전자	4,150,000
		거실+안방+침실1+침실2+침실3+패밀리룸	삼성전자	10,450,000
	고급형	거실+안방+침실1+침실2+침실3+패밀리룸	삼성전자	13,300,000
84T	일반형	거실+안방	삼성전자	4,220,000
		거실+안방+침실1+침실2+주방+패밀리룸	삼성전자	11,010,000
	고급형	거실+안방+침실1+침실2+주방+패밀리룸	삼성전자	13,910,000
93T	일반형	거실+안방	삼성전자	4,160,000
		거실+안방+침실1+침실2+침실3+패밀리룸	삼성전자	10,730,000
	고급형	거실+안방+침실1+침실2+침실3+패밀리룸	삼성전자	13,610,000
98T	일반형	거실+안방	삼성전자	4,980,000
		거실+안방+침실1+침실2+주방+패밀리룸	삼성전자	11,720,000
	고급형	거실+안방+침실1+침실2+주방+패밀리룸	삼성전자	14,690,000
126T	일반형	거실+안방	삼성전자	4,730,000
		거실+안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패밀리룸	삼성전자	13,060,000
	고급형	거실+안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패밀리룸	삼성전자	16,550,000

※ 유상옵션(시스템에어컨)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타입별 유상옵션 금액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매립냉매배관(거실 및 안방)은 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금액은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복층타입 세대의 경우, 거실 에어컨 위치가 기준층 거실 에어컨 위치와 상이하오니 유상 옵션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상 에어컨 설치위치는 기준층(복층타입 제외 세대)을 기준으로 표현되었으며, 복층타입 세대는 제작사의 A/S 불가 등의 사유로 위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냉매배관만 시공되며, 설치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실외기 용량(크기, 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외기의 설치로 일부 세대의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의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가 다용도실인 세대의 경우 실외기 운전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사용 전 반드시 실외기실(실외기가 다용도실에 있는 세대 포함) 그릴창을 개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개방 상태에서 작동 시 밀폐된 공간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기기 고장 및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에 실내기와의 연결배관이 일부 노출되어 실외기 실 사용공간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은 불가하다는 사실,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 내부 냉난방을 위해 설치된 제품으로 본 유상옵션 품목과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시공사)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세대는 건축 공정상 기본설치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거실 및 안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옵션으로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 외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할 시 별도의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에 연결할 경우 A/S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무상A/S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기 1대당 리모컨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실외기는 현장여건(전력 용량 등)에 따라 1개 이상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세대는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원활한 냉방 성능 확보와 열기 배출을 위한 실외기 토출가이드 설치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설치 목적 : 실외기 열기 배출 방향 유도 및 주변 공간 온도 상승 방지)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② : 스타일업 [단위: 원, VAT 포함]

약식표기 (타입)	종류		공급금액	구성 및 세부사항	비고(발코니확장형 마감사양)
45	현관 스타일업		1,390,000	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	-
	거실 스타일업		960,000	아트월 타일 600*1200mm 업그레이드(2면), 복도&소파뒷벽 디자인 벽 패널	아트월 타일 400*800mm(1면), 그 외 도배마감
	조명 특화		2,040,000	우물천장 2면 리니어 직간접 조명 + 실링팬	-
	주방 스타일업	기본형	440,000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매립형콘센트 추가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벽타일300*600mm
		고급형	3,320,000	세라믹타일 벽&상판 업그레이드 +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 매립형콘센트 추가	
	욕실 스타일업	욕실(공용)	1,21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벽타일 300*600mm, 바닥타일 300*300mm (비데 기본제공)
	빌트인 냉장고 패키지		5,220,000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 + 맞춤형 냉장고장	기본 냉장고장
	안방 붙박이장		1,110,000	붙박이장	-
	침실2 붙박이장		1,220,000	붙박이장	-

58	현관 스타일업		1,390,000	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	-
	거실 스타일업		1,170,000	아트월 타일 600*1200mm 업그레이드(2면), 복도&소파뒷벽 디자인 벽 패널	아트월 타일 400*800mm(1면), 그 외 도배마감
	조명 특화		2,420,000	우물천장 2면 리니어 직간접 조명 + 실링팬	-
	주방 스타일업	기본형	1,750,000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의 아일랜드(양면수납형, 매립형콘센트)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벽타일300*600mm, (아일랜드 미제공)
		고급형	5,300,000	세라믹타일 벽&상판 업그레이드 +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 세라믹타일 상판의 아일랜드(양면수납형, 매립형콘센트)	
	욕실 스타일업	욕실(공용)	1,18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벽타일 300*600mm, 바닥타일300*300mm (비데 기본제공)
	빌트인 냉장고 패키지		5,740,000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 + 맞춤형 냉장고장	기본 냉장고장
	안방 붙박이장		1,110,000	붙박이장	-
	침실2 붙박이장		1,220,000	붙박이장	-

59	현관 스타일업		1,290,000	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	-
	거실 스타일업		1,600,000	아트월 타일 600*1200mm 업그레이드(2면), 복도&소파뒷벽 디자인 벽 패널	아트월 타일 400*800mm(1면), 그 외 도배마감
	조명 특화		1,990,000	우물천장 2면 리니어 직간접 조명 + 실링팬	
	주방 스타일업	기본형	440,000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매립형콘센트 추가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벽타일300*600mm
		고급형	1,950,000	세라믹타일 벽&상판 업그레이드 +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 매립형콘센트 추가	
	욕실 스타일업	욕실1(공용)	1,37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욕조 에이프런 타일 추가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벽타일 300*600mm, 바닥타일300*300mm (비데 기본제공)
		욕실2(부부)	1,18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빌트인 냉장고 패키지		5,580,000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 + 맞춤형 냉장고장	기본 냉장고장
	안방 드레스룸 특화		920,000	중문(원 슬라이딩 도어) + 시스템선반	-
	침실2 붙박이장		1,030,000	붙박이장	-

70	현관 스타일업		1,310,000	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	-
	거실 스타일업		1,770,000	아트월 타일 600*1200mm 업그레이드(2면), 복도&소파뒷벽 디자인 벽 패널	아트월 타일 400*800mm(1면), 그 외 도배마감
	조명 특화		2,270,000	우물천장 2면 리니어 직간접 조명 + 실링팬	-
	주방 스타일업	기본형	440,000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 매립형콘센트 추가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벽타일300*600mm
		고급형	1,950,000	세라믹타일 벽&상판 업그레이드 +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 매립형콘센트 추가	
	욕실 스타일업	욕실1(공용)	1,37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욕조 에이프런 타일 추가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벽타일 300*600mm, 바닥타일300*300mm (비데 기본제공)
		욕실2(부부)	1,18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빌트인 냉장고 패키지		5,670,000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 + 맞춤형 냉장고장	기본 냉장고장
	안방 드레스룸 특화		920,000	중문(원 슬라이딩 도어) + 시스템선반	-
	침실2 붙박이장		1,030,000	붙박이장	-

84	현관 스타일업		1,290,000	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	-
	거실 스타일업		2,770,000	아트월 타일 600*1200mm 업그레이드(2면), 복도&소파뒷벽 디자인 벽 패널	아트월 타일 400*800mm(1면), 그 외 도배마감
	조명 특화		2,380,000	우물천장 2면 리니어 직간접 조명 + 실링팬	-
	주방 스타일업	기본형	2,080,000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의 아일랜드(양면수납형, 매립형콘센트)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벽타일300*600mm, (아일랜드 미제공)
		고급형	5,690,000	세라믹타일 벽&상판 업그레이드 +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 세라믹타일 상판의 아일랜드(양면수납형, 매립형콘센트)	
	욕실 스타일업	욕실1(공용)	1,39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욕조 에이프런 타일 추가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벽타일 300*600mm, 바닥타일300*300mm (비데 기본제공)
		욕실2(부부)	1,19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빌트인 냉장고 패키지		5,740,000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 + 맞춤형 냉장고장	기본 냉장고장
	안방 드레스룸 특화		2,180,000	중문(2연동 슬라이딩 도어) + 시스템선반(파우더장포함)	-
	침실2 붙박이장		2,770,000	붙박이장(슬라이딩도어)	-

73T	현관 스타일업		1,390,000	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	-
	주방 스타일업	기본형	440,000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 매립형콘센트 추가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벽타일300*600mm
		고급형	3,320,000	세라믹타일 벽&상판 업그레이드 +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 매립형콘센트 추가	
	욕실 스타일업	욕실1 (하층 공용)	1,21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벽타일 300*600mm, 바닥타일300*300mm (비데 기본제공)
		욕실2 (상층 공용)	1,37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욕조 에이프런 타일 추가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빌트인 냉장고 패키지		5,220,000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 + 맞춤형 냉장고장	기본 냉장고장
	안방 붙박이장		1,110,000	붙박이장	-
	침실1 붙박이장		1,220,000	붙박이장	-

84T	현관 스타일업		1,290,000	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	-
	주방 스타일업	기본형	440,000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 매립형콘센트 추가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벽타일300*600mm
		고급형	1,950,000	세라믹타일 벽&상판 업그레이드 +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 매립형콘센트 추가	
	욕실 스타일업	욕실1 (하층 공용)	1,37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욕조 에이프런 타일 추가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벽타일 300*600mm, 바닥타일300*300mm (비데 기본제공)
		욕실2 (하층 부부)	1,18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욕실3 (상층 공용)	1,37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욕조 에이프런 타일 추가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빌트인 냉장고 패키지		5,580,000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 + 맞춤형 냉장고장	기본 냉장고장
	안방 드레스룸 특화		870,000	중문(원 슬라이딩 도어) + 시스템선반	-
	침실1 붙박이장		1,220,000	붙박이장	-

93T	현관 스타일업		1,390,000	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	-
	주방 스타일업	기본형	1,710,000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의 아일랜드(양면수납형, 매립형콘센트)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벽타일300*600mm, (아일랜드 미제공)
		고급형	5,300,000	세라믹타일 벽&상판 업그레이드 +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 세라믹타일 상판의 아일랜드(양면수납형, 매립형콘센트)	
	욕실 스타일업	욕실1 (하층 공용)	1,21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벽타일 300*600mm, 바닥타일300*300mm (비데 기본제공)
		욕실2 (상층 공용)	1,37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욕조 에이프런 타일 추가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빌트인 냉장고 패키지		5,740,000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 + 맞춤형 냉장고장	기본 냉장고장
	안방 붙박이장		1,110,000	붙박이장	-
	침실1 붙박이장		1,220,000	붙박이장	-

98T	현관 스타일업		1,310,000	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	-
	주방 스타일업	기본형	440,000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 매립형콘센트 추가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벽타일300*600mm,
		고급형	1,950,000	세라믹타일 벽&상판 업그레이드 +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 매립형콘센트 추가	
	욕실 스타일업	욕실1 (하층 공용)	1,37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욕조 에이프런 타일 추가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벽타일 300*600mm, 바닥타일300*300mm (비데 기본제공)
		욕실2 (하층 부부)	1,18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욕실3 (상층 공용)	1,37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욕조에이프런 타일추가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빌트인 냉장고 패키지		5,670,000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 + 맞춤형 냉장고장	기본 냉장고장
	안방 드레스룸 특화		920,000	중문(원 슬라이딩 도어) + 시스템선반	-
	침실1 붙박이장		1,220,000	붙박이장	-

126T	현관 스타일업		1,290,000	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	-
	주방 스타일업	기본형	2,080,000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의 아일랜드(양면수납형, 매립형콘센트)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벽타일300*600mm, (아일랜드 미제공)
		고급형	5,690,000	세라믹타일 벽&상판 업그레이드 + 싱크수전&싱크볼 업그레이드 + 세라믹타일 상판의 아일랜드(양면수납형, 매립형콘센트)	
	욕실 스타일업	욕실1 (하층 공용)	1,39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욕조 에이프런 타일 추가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벽타일 300*600mm, 바닥타일300*300mm (비데 기본제공)
		욕실2 (하층 부부)	1,19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욕실3 (상층 공용)	1,390,000	벽 타일 600*600mm 업그레이드 + 욕조 에이프런 타일 추가 + 도기&수전&비데 업그레이드	
	빌트인 냉장고 패키지		5,740,000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 + 맞춤형 냉장고장	기본 냉장고장
	안방 드레스룸 특화		2,180,000	중문(2연동 슬라이딩 도어) + 시스템선반(파우더장 포함)	-
	침실2 붙박이장		2,600,000	붙박이장(슬라이딩도어)	-
	침실3 붙박이장		2,110,000	붙박이장(슬라이딩도어)	-

※ 유상옵션(스타일업) 유의사항

- 각 타입에 따라 설치 품목 및 위치가 일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타일업 옵션 내역 중 일부 부분만 개별 선택은 불가하며, 선택형 옵션은 타입별로 정해진 옵션 내에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평면에 따라 가구 길이 및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석재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나누기도는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 구조 및 현관 크기에 따라 슬라이딩도어 형태 및 크기가 상이할 수 있으니, 평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거실 메인벽체 아트월은 일반타일(400*800mm)로 시공되며, 기타 벽체는 실크벽지로 시공됩니다.**
- **거실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거실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600*1,200mm)로 시공되며, 임의로 설치면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아트월 및 아트월 면 추가 설치면은 견본주택 및 옵션계약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복층타입은 거실 스타일업 옵션이 없으며, 거실 아트월은 스톤보드(900*2,300mm)로 시공되고 복도 및 계단실, 패밀리룸이 디자인 벽 패널로 시공됩니다.**
- **복층 126T타입은 상층부 오픈구간 마감 품질향상을 위하여 아트월 스톤보드(900*2,300mm)가 2면 적용되니, 자세한 내용은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디자인 패널 고정을 위해 본 공사 시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조명 특화 미 선택 시 일반 등이 설치되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선택 여부에 따라 상판 전면 두께 및 주방가구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상 이음매 간격 및 나누기도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싱크볼은 타입별 사이즈가 상이하오니 견본주택 및 옵션계약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벽체 타일(300*600mm), 상판 인조대리석(MMA), 일반 싱크볼, 일반 싱크수전이 설치되며 공급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 안방 붙박이장 및 드레스룸의 경우, 평면 조건에 따라 가구 사이즈 및 구성항목이 상이하오니 각 타입별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스타일업 미 선택 시 일반타일, 기본형 위생도기, 기본형 수전, 기본형 액세서리, 또는 욕조가 설치됩니다.
- 욕실 스타일업 선택시 욕실별 젠다이 상판(엔지니어드스톤)의 종류는 디자인 계획상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빌트인냉장고 패키지 옵션 미 선택 시 냉장고 공간과 상부장이 시공되며, 설치되는 냉장고 제품에 따라 돌출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 빌트인냉장고 패키지 옵션 선택 시 위치 및 열림 방향은 좌우세대 및 타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빌트인냉장고 패키지 옵션 선택 시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빌트인 냉장고 패키지의 위치 및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어 이에 따라 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냉장고 패널 색상은 납품시점의 삼성전자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빌트인냉장고 패키지 옵션 중 냉장고의 무상A/S 기간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 및 제3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공급계약서(또는 옵션계약서) 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126T타입의 냉장고장 상부장은 계단이 시공됨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거실에 설치되는 우물천장 측면(2면)에 조명이 시공되며, 기본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의 조명은 라인조명 특성상 조명간 이음새가 발생하며 이음새의 위치와 수량은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조명특화 옵션 비용에는 실링팬 설치를 위한 천장 고정 보강 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소비자가 직접 실링팬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천장 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 거실 조명특화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실링팬은 가동 초반에 진동소음이 들릴 수 있으며 여유공간 내에 높이가 있는 가구, 펜던트 조명, 가전 등 장애물이 있을 경우 유입되는 공기의 양이 줄어 바람이 약해질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조명특화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실링팬은 무선 컨트롤러가 제공되며 별도의 스위치를 연결하여 사용 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무상 A/S 기간에도 A/S 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선택형 개별옵션

[단위: 원, VAT 포함]

약식표기 (타입)	품목	설치장소	제조사	제품명	공급금액
전타입	빌트인 3구 인덕션	주방	삼성전자	비스포크 인덕션(NZ63B5056AK)	990,000
	기능성 전기오븐	주방	삼성전자	비스포크 콤팩트 전기오븐(NQ36A6555CK)	500,000
45, 58	복합 환풍기(1개소)	욕실	힘펠	휴젠뜨3(FHD3-C150P_LUMI)	590,000
59, 70, 84, 73T, 93T	복합 환풍기(2개소)	욕실1, 2			1,190,000
84T, 98T, 126T	복합 환풍기(3개소)	욕실1, 2, 3			1,780,000

※ 유상옵션(선택형 개별옵션) 유의사항

- 선택형 개별옵션은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제품 개발에 따라 기능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형 개별옵션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기타 기기 등의 설치위치,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형 개별옵션 금액은 옵션 선택으로 인하여 시공되지 않는 기본마감 등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선택형 개별옵션의 경우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의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시공상 중문틀 또는 벽 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하부레일은 바닥(마루, 디딤석)과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특성상 개방 시 벽체에서 돌출되며 돌출 사이즈는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복층타입의 현관중문은 천장 매립형이 아닌 돌출형 타입으로 상부 프레임이 노출형태로 시공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은 각 형별 평면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단열,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자 임의 지정 불가)
-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빌트인 가전의 전원 연결을 위해 가구 내 전선 인출구가 타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빌트인 3구 인덕션 선택 시 주방 상판 또는 주방 벽체에 매립형 가스차단밸브가 설치 예정이며 가스배관이 일부 구간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빌트인 3구 인덕션 미 선택 시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선택형 개별옵션의 무상A/S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공급계약서(또는 옵션계약서) 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기능성 전기오븐 미선택시 가구장으로 시공됩니다.
- 복합 환풍기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욕실에 제품이 설치되며, 기존의 일반 배기팬의 설치 위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주방가전 제품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분양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납부금액	납부시기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10%	계약 시	IBK기업은행	477-062758-04-028	라온건설(주)
중도금	10%	2027.02.15.			
잔금	80%	입주 시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10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공통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아파트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되어 계획된 단지로 전체 대지면적에서 각각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차후 확정 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대지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 또는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됩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분양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필요 시 방문하여 확인)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진행 중 견본세대(샘플하우스)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당사에서 임의로 선정예정임. 견본세대는 준공시 내부마감재 파손부위, 도배, 도장부위만 재시공하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 시 등급이 달라지거나, 각 항목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계단실 등 공용부 및 단위세대 내 대피공간에 물건 등의 적치 행위는 「소방법」에 저촉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피난 안전 등의 사유로 적치 불가함을 안내하오니 위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등)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계약시 주의사항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약정일 이전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기상이변, 문화재발굴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공공기관의 기반시설건설,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이를 계약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입주지정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자는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브랜드)	• 공동주택의 명칭은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단지명 포함)와 동명칭(동수)은 향후 "사업주체" 혹은 "시공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 유상옵션	• 계약자의 발코니확장 공사 및 유상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옵션을 포함한 계약자의 옵션 계약은 세대별 개별 계약에 따라 진행되며,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시공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시공자는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대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납부일자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공자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납부 관련 사항을 안내할 수 있으나, 대금 납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세대별 시공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설치 위치, 벽체 두께, 천장 환기구 및 에어컨 매립배관의 위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 습도 및 입주자의 생활 습관 등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적절한 환기 등 결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단, 환기 부족 등 입주자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한 결로 현상은 관련 기준 및 책임 범위에 따라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로티	• 단지 내 1층(일부동 1층 및 2층)은 필로티와 근린생활시설(일부동)이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옆, 상부 세대는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위층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방형 발코니 / 테라스	• 70·84타입 일부 세대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세대의 개방형 발코니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방형발코니 및 복층타입 테라스에는 별도의 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테라스 출입 시 실내외 단차 및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한 창호 턱 등으로 인해 발이 걸리거나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 바랍니다.
	복층타입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스프링클러, 난방설비, 콘센트, 창호, 마감재 등이 일반층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아래층 세대의 경우, 상부층 세대의 우수 및 배수배관 설치부위에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테라스 공간에 환기구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기구 면적만큼의 공간 및 시야가 차단되고, 다소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거실(실내)과 테라스(실외)의 바닥 마감높이가 창호를 경계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에 접한 옥상 바닥은 설계상 발생되는 공간으로서 전용공간이 아님에 따라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한 행사 및 사유화하여 사용이 불가하고,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진입요구 시 개방하여야 함에 따라 생활상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경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용홀	• PD, EPS, TPS실 등 내측면 조적 및 철판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 또는 도장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단, 지하 및 1층에는 공용홀 마감계획에 따라 조적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지반	• 단지 지반레벨 극복을 위하여,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콘크리트 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 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 및 등기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조 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관리비는 통합 산정되며, 입주 후 관리사무소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시 기존 설치 마감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개시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단지내에 지상 혹은 지하에 공공시설(기반시설 등)이 설치될 경우, 등기부상에 별도의 등기사항설정(구분지상권 등)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공용)보도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은 준공 이후 입주민 혹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구성된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됩니다. • 입주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사다리차 이사가 불가할 수 있으며, 입주 전 이사업체 및 관리사무소에 이사 여건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주택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 예정입니다.

인허가 (설계변경 등)	• 공사 중 현장여건 반영 및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경미한 변경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하여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 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광고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차도, 학교, 공원, 녹지,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시행주체, 서울시, 국가시책 등에 따라 변경,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84타입(개방형발코니 포함세대)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홈페이지 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제공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은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면형태 및 가구형태(일부 유상 또는 무상, 기준층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등의 CG 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형태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마감 자재는 유상옵션 품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홈페이지, 상담석, CG 등을 통해 기본형 마감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 회사의 도산, 신제품의 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또는 이상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템 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수량, 사양, 설치 위치, 마감재 등이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 등을 포함하여 주변 환경과 부지 내 계획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제60조 3항에 따라 견본주택 내 평면도(설계도면), 시방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도서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 시 분양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으로 시공된 부분은 전시용품목과 연관된 각종 배관, 배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사업시행인가(변경포함) 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견본세대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의 판단은 KS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 침대, 테이블, 소파 등), 생활가전류(밥솥,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조경 등), 전시 조명 등은 견본주택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이므로 본공사 시 관련 배관, 배선을 포함하여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되었으며 본 공사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결과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과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예정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콘센트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개방형발코니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공된 것으로, 실제 세대의 테라스 면적, 유리 난간 시공 형태 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및 주동계획	• 본 단지의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옥상장식물, 외부조명시설, 옹벽, 담장(생울타리 및 펜스),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피난안전구역 상하부층으로 계단실을 통하여 이동시, 피난안전구역층의 피난안전구역과 엘리베이터홀을 통과해야 하므로 피난안전구역층에 위치한 세대는 이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에서 계획된 공개공지(동일로변 남측 215.34㎡, 동일로변 북측 240.04㎡ 2개소) 및 공공보행통로(본 단지 북측 공공청사(중화119안전센터)와 접하여 설치(폭3~4.5m))는 심의 조건, 인허가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는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상시 개방되어야 하며, 보행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구조물 등을 설치 할 수 없고 유지보수 등의 관리책임은 본 단지(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은 계약 시 분양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단지 주변 도로 및 지형은 일부 간소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 도로와 교통시설물 등은 인허가 당시의 기준으로 제작하였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 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측량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대지면적 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황 측량 결과에 따라 사업부지 경계 레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도레벨, 상가진입레벨 등이 달라지고 계단, 경사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 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동별로 차량 및 보도 이동 시 이동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 동의 주변레벨 관계, 동출입구의 위치, 단지 내외부 이동동선 및 단지 주변 시설과의 거리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 해석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 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 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시행인가 변경 시 기인가 도서상의 내용과 견본주택에 전시된 사항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허가 진행 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 시 또는 이후 해당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이나 해충 발생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준공 후 조경 유지 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수목고사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창호크기,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등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 특화 디자인,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분양계약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별도 동의 절차 없이 변경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옥외 보안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 반사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접 부지(101동 인근)에 소방서가 위치하고 있어 소방차 출동 및 훈련 등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현장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td><td>• 단지 남측에는 6층규모의 빌딩(빌딩명 : 그린프라자)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서 소음, 빛공해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주차장</td><td>
• 단지 차량출입구는 대지 남측 14M 도로(동일로 129길)를 통해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부속동 활용성 및 하자 예방 등의 사유로 위치, 면적, 층별 내부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지하 1~3층 총 350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고 입주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층별 지하주차장 주차계획
<table>
<tr><th>구분</th><th>공동주택</th><th>오피스텔</th><th>근린생활시설</th><th>계</th></tr>
<tr><td>지하 1층</td><td>-</td><td colspan="2">58대</td><td>58대</td></tr>
<tr><td>지하 2층</td><td>52대</td><td colspan="2">98대</td><td>150대</td></tr>
<tr><td>지하 3층</td><td>142대</td><td colspan="2">-</td><td>142대</td></tr>
<tr><td>계</td><td>194대</td><td colspan="2">156대</td><td>350대</td></tr>
</table>
• 전기차 충전시스템(완충형)은 총 9개소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구조 및 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수량 및 위치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법정 기준에 맞추어 2.3m 이상 설계되었으며,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 지하 1층 2.3M ~ 2.7M / 지하 2층 2.3M ~ 2.7M / 지하 3층 2.3M

• 구조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인접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유효 천장고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 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용도별·동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정주차구획운영·통제는 관리주체 책무입니다.

• 주차부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계단실은 비난방, 비단열 공간으로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 세대는 출입구를 이용하는 차량에 의해 빛 공해, 소음, 진동 등의 생활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td></tr>
<tr><td>부대 복리시설</td><td>
■ 부대복리시설

- 부대시설 :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정화조, 전기차충전시설, 제연휀룸, 관리사무소 등

- 복리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입주자집회소 등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심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아파트, 오피스텔이 혼합되어 계획된 단지로 단지 내 계획된 주민공동시설(어린이 놀이터, 커뮤니티센터 등)은 오피스텔 입주민과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칭) 및 오피스텔 관리단에서 결정됨을 확인하고, 추후 아파트 입주민의 단독사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 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센터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 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시 위치, 동선, 실내 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td></tr>
</table>

부대 복리시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공동주택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지 내 공공개방 커뮤니티 등은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운영방안이 결정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심의 조건, 인허가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공개방조건으로 지정된 시설은 공공개방시설로 운영됩니다. (운영권은 인허가권자와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사항을 승계함), 또한, 입주예정자는 커뮤니티 공공개방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공개방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인허가청 협의 결과에 따름) •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차량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소음으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받을 수 있으니, 분양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분양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분리 및 보관시설(생활폐기물 용기, 재활용품 보관용기)의 위치 및 개소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 냄새,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회의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입주민공용시설 등)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 등을 진행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주민회의실 등)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과 엘리베이터 홀 천장부분 등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 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 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와 별도로 분양신고를 통해 분양되며,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합니다. 시설개선,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는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검사 이후에도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본 단지 또는 주무관청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에어컨 실외기는 각 동 필로티에 통합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실외기실 인근 세대의 경우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로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입주자집회소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 법률의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입주예정자협의회 포함) 협의 결과, 기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평면, 가구 및 마감재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과 창호개폐방향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기준높이는 2.3m로 시공됩니다.(욕실・발코니・우물천장 제외) 단, 본 공동주택 복층타입 세대의 경우, 거실 및 현관의 상층 오픈공간으로 높이는 최대 5,280mm 범위에서 시공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실위치와 출입문폭, 보일러 시설 등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가스배관과 후드배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욕조, 샤워부스, 가구 하부장(싱크대 포함)은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및 빌트인 가전제품 등으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 개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 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인조강화석, 타일 등 석재, 타일류와 주방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바닥재는 목재재질로 이루어진 마루이며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후면과 욕조가 접한 벽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미시공됩니다.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스배관, 가스밸브, 스위치, 조명기구, 수전, 콘센트, 보일러, 전열교환기 등의 설비 위치 및 제품, 사양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도장・마감재질과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침실 목창호 문선은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디자인월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콘센트와 배선이 노출됩니다. • 현관 마루굽돌과 주방가구 상판의 마감은 마감재 특성상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부벽체는 석고보드 경량벽체로 시공되며 이에 따라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올림공간(우물천장)의 천장고는 상부세대 및 당해층 설비배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벽체 시공에 의해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분양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유리 파손 시 상당한 교체비용이 소요되며, 이에 대해 분양사업자, 사업주체, 시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입주자의 생활 습관 및 환기 상태에 따라 창호 및 외기에 노출되는 벽면 마감재 등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께서는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 적절한 관리를 통해 결로 발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의 사용·관리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결로 및 이로 인한 손상은 관련 법령 및 하자보수 기준에 따라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 세대 및 공용부 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 단열시뮬레이션, 가시도, 사용성), 관련 기준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 프레임의 구조형상, 규격 및 위치 색상, 개폐창호의 위치 및 방향, 방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방법, 하드웨어, 난간의 설치 위치 및 디자인, 고정방법 등)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의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현관 창고,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보일러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의 경우 마감 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 난방이 시공됩니다. 욕실의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 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장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 침실 내부에 세대분전함 또는 세대단자함이 개별로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대 평면, 가구 및 마감재	• 아파트의 현장 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 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대피공간 조명은 본 공사 시 사용성 및 조도 개선 목적으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은 계획된 용도 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기타 적재공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장비성능(소음,진동)이상 및 효율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위는 비난방 구간으로, 결로 등에 의한 적재물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의 크기는 평면 구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출입문의 유효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각 세대에는 화재 방지 및 피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피 공간이 있으며, 대피 공간에 피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상 피난계획을 위해 101동 1호, 2호, 102동 1호, 2호 세대는 아래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101동 3호, 4호, 102동 3호, 4호 세대는 대피공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는 발코니 또는 대피공간은 화재시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오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동별 피난계획 적용 사항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에 비치된 관련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피난구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물건 등을 적치하지 않고 항상 개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거실(실내)과 테라스(실외)의 바닥 마감높이가 창호를 경계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가스배관, 가구장, 액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유지 등에 따라 미입주 시에도 일부 전기 사용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분전반 차단 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범 및 경보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주방가구, 쿡탑, 개수대, 액세서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방, 침실에 설치되는 통합형 전자식 스위치의 온도 조절기 및 조명 스위치는 동일한 색상일지라도 제조사별 제작 및 도색 방식이 상이하여 서로 이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방형발코니 및 테라스의 경우 각실(실내)과 개방형발코니 및 테라스(실외)의 바닥 마감높이가 창호를 경계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유리색상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레버 형태,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소방시설물 및 설비배관 작업으로 인해 각 실 커튼박스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방형발코니 또는 테라스 창호 손잡이는 자동잠금 기능이 없는 제품으로 세대 내 다른 창호의 손잡이와 다름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계 설비	• 주방 및 다용도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 하부에 각 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table>
<tr>
<td>전기기계 설비</td>
<td>
•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분전함, 단자함은 세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 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 부위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또는 홈오토메이션)의 기능이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한전주)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 협의 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단, 설치 위치 및 수량은 실시공시 이동통신설비업자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설치 위치</th></tr>
<tr><td>옥외 안테나</td><td>해당없음</td><td>-</td></tr>
<tr><td rowspan="3">중계 장치</td><td>지하2층</td><td>102동 아파트 EPS/TPS실(1개소)</td></tr>
<tr><td>지하1층</td><td>102동 아파트 EPS/TPS실(1개소)</td></tr>
<tr><td>지상 10층</td><td>103동 오피스텔 TPS실(1개소)</td></tr>
</table>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 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 4가 되는 지점에 측뢰 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 외벽(특정세대 발코니 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외 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으며, 일부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 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경관 조명에 의한 빛 반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붕에는 경관조명,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 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 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시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해 일부 아파트에는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동 101동(2호, 3호, 4호 라인 옥상), 102동(2호, 3호, 4호 라인 옥상), 103동(1호, 2호 라인 남쪽 외벽면, 1호라인 서쪽 외벽면)]

• 태양광 용량, 건축 마감 등 설치여건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설치 위치 및 면적,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 저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램프 진출입로에 설치되는 출차경광등은 최소 50dB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탁실에 전열교환기 및 에어컨실외기, 가스계량기 등이 설치되는 세대는 각종 설비 연결을 위한 배관이 길게 노출되어 미관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td>
</tr>
</table>

■ 교육관련 유의사항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초등학교는 묵동초등학교에 학생 배치 예정이며, 이는 교육행정기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부지는 각 필지별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준공 시 합필 및 공부정리 및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 계약자 안내 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단, 사전방문 일정을 통보한 이후라도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방문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월 : 2029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제 키불출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중 선도래하는 날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키불출 여부,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계약자(입주자)의 관리부재, 부주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와 리스크에 대해서도 계약자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 대금, 중도금 대출 상환 등이 완료되어야 가능하며, 보존등기일 이전 납부세대는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 납부세대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시지 않는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 입주일 및 분양대금등의 완납일과 상관없이 정비사업의 특성상 보존등기는 이전고시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며, 이전고시가 지연될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담보책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때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내진능력(MMI 등급)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Ⅶ-0.197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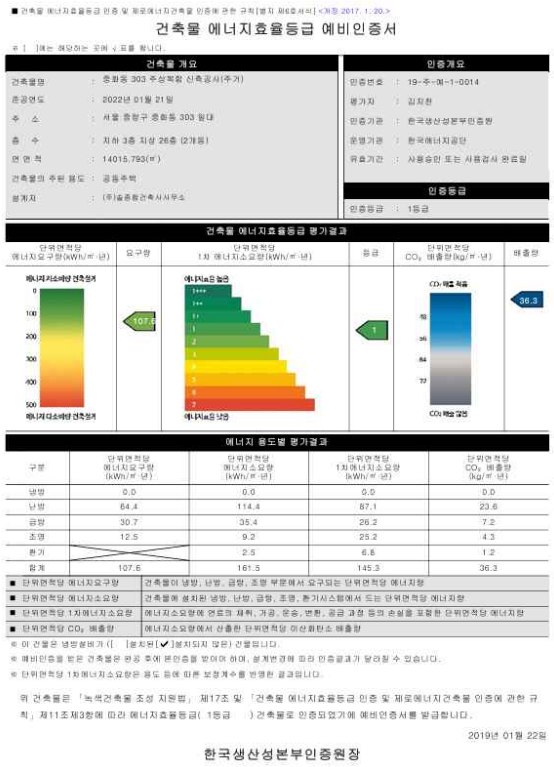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Ⅻ)으로 표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의2

주차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2.1m 이상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2.7m 이상
	2.3m ~ 2.7m	2.3m ~ 2.7m	2.3m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녹색건축 예비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 중화동 303 주상복합 신축공사(주거)	인증번호	: 19-주-에-1-0014
준공연도	: 2022년 01월 21일	평가자	: 김지찬
주 소	: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3 일대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 수	: 지하 3층 지상 26층 (2개동)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 면 적	: 14015.793(㎡)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솔중합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kg/㎡·년)	배출량
에너지 지수이하 건축물기준 0 100 200 300 400 500 에너지 다소이하 건축물기준	107.6	에너지소요 절감 1+++ 1++ 1 2 3 4 5 6 7 에너지소요 낭비	1	CO_2 배출 적음 55 36 64 72 CO_2 배출 많음	36.3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64.4	114.4	87.1	23.6
급탕	30.7	35.4	26.2	7.2
조명	12.5	9.2	25.2	4.3
환기		2.5	6.8	1.2
합계	107.6	161.5	145.3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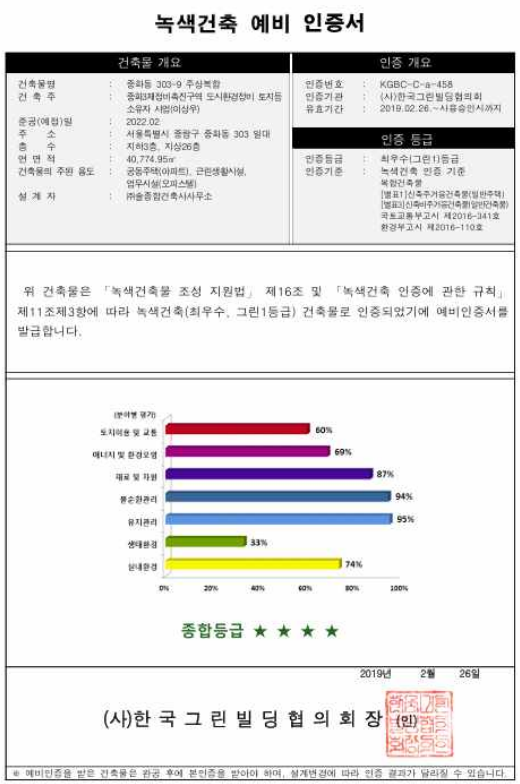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됨 [✓]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01월 22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중화동 303-9 주상복합	인증번호	: KGBC-C-a-458
건 축 주	: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 토지등소유자 사업(이상우)	인증기관	: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준공(예정)일	: 2022.02	유효기간	: 2019.02.26.~사용승인시까지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03 일대		
층 수	: 지하3층 지상26층		
연 면 적	: 40,774.95㎡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설 계 자	: (주)솔중합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1)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복합건축물 [별표1](신축주거용건축물(일반주택) [별표3](신축비주거용(업무용)단독주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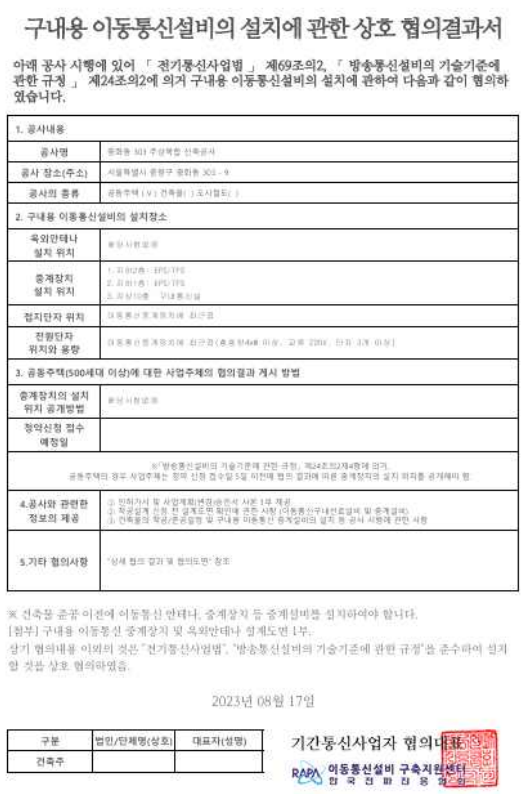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최우수, 그린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 ★ ★

2019년 2월 26일

(사)한 국 그 린 빌 딩 협 의 회 장 (인)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번호 : m-RAPA-1712-02-02-3356 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 전기통신사업법 」 제69조의2,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1. 공사내용	
공사명	중화동 303 주상복합 신축공사
공사 장소(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03 - 9
공사의 종류	공동주택 (∨) 건축물 () 도시철도 ()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옥상 시험성로
중계장치 설치 위치	1. 지하2층 : EPS/TPS 2. 지하1층 : EPS/TPS 3. 지상1층 : 구내통신실
접지단자 위치	구내통신실 옥외안테나 접근로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구내통신실 계량장치에 접근로(폭 또는 4㎡ 이상, 고저 2.0m 이하, 단차 3.0m 이상)
3.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에 대한 사업주체의 협의결과 게시 방법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옥상 시험성로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협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4.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부 제공 ② 착공설계 도면 전 설계도면 협의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 ③ 건축물의 착공/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5.기타 협의사항	"상세 협의 결과 및 협의도면" 참조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
상기 협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협의하였음.

2023년 08월 17일

구분	법인/단체명(상호)	대표자(성명)
건축주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

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 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22026-101-0002200호	₩85,507,1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주상복합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관련 유의사항**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1566-9009)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별도]

구분	건축	전기·소방·통신
상호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세정이에프씨
금액	1,148,000,000	1,10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매도인 겸 사업시행자)	사업주체(사업대행자)	시공자
상 호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신영부동산신탁(주)	라온건설(주)
사업자등록번호	118-82-64989	636-81-01262	608-81-04551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85, 2층(중화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998, 비동 1층

■ **사업대행형 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분양(공급)은 매도자 겸 사업시행자 중화3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사업대행자 겸 수탁자(신탁회사) 신영부동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사업대행형 신탁계약에 근거함을 계약자는 인지하고, 중화3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와 신영부동산신탁㈜ 사이의 신탁계약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등을 의미함)되는 경우, 본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관련 신영부동산신탁㈜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중화3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로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가 신영부동산신탁㈜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상 모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라온건설㈜, 중화3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홈페이지 (https://www.jh-ra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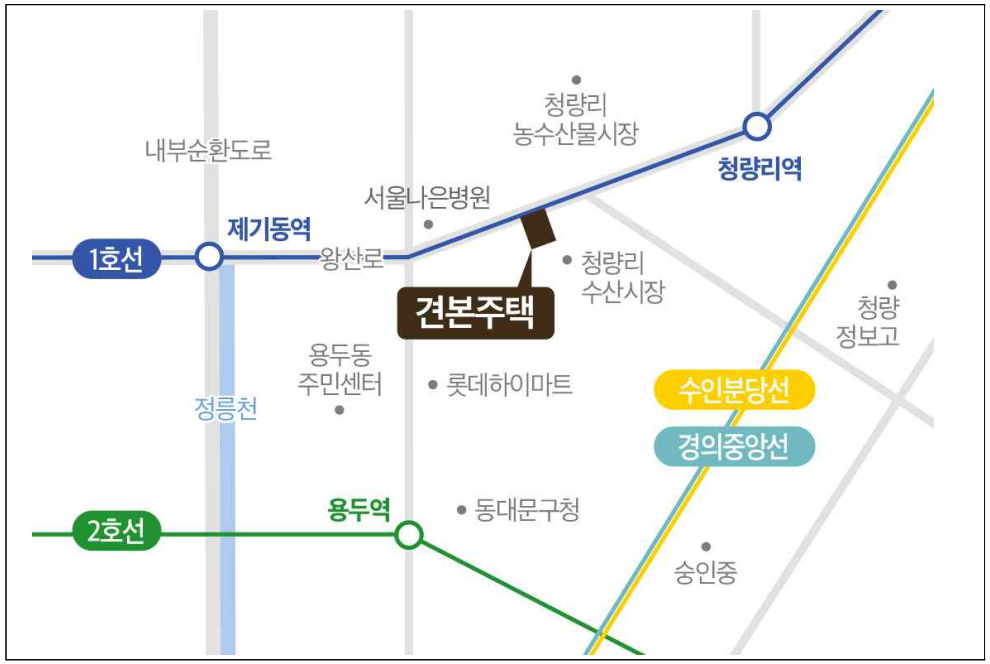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13번지(☎ 1555-6223)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견본주택 위치]



[현장 위치]

